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3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제29권 제3호)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한국 산업스파이 범죄의 처벌규정 및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

Improvement Regarding the Restrictions and Sentencing Guidelines of the Industrial Espionage in Korea

박 락 인*

차 례

● 국 문 요 약 ●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서 세계 각국은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상대기업과 국가의 산업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산업스파이는 21세기에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이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고 예언하였듯이 기술개발에 비례하여 산업스파이도 날로 첨단화, 지능화, 고도화 되어 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국제무대의 중심 도시이고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도 높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산업스파이들의 핵심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무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이루어 놓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산업기술유출 범죄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산업기술 유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영업비밀 유출로 얻게 될 이익이 처벌 가능성에 비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산업기술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기업에서는 인사관리 및 직원들의 후생과 복지 등 인력관리에 신경을 써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기술유출과 관련한 처벌규정은 온정주의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하되는 낮은 선고형과 피해금액 산정의 문제점, 재판과정에서의 추가유출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것도 인력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의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현황과 수사체계, 산업유출방지법에 대한 처벌규정을 알아보고자 하며 또한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 법적 규정의 문제점을 논해 보고자 한다.

* 중앙경찰학교 수사학과 교수

Ⅰ. 서 론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서 세계 각국은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상대기업과 국가의 산업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산업스파이는 21세기에 가장 큰 사업중의 하나이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고 예언하였듯이 기술개발에 비례하여 산업스파이도 날로 첨단화, 지능화, 고도화 되어 가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 산업스파이 적발건수는 총 438건에 이르는 등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1]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40여건에 이르던 산업스파이 범죄가 지난해에는 111건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5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핵심기술 유출로 기업이 입은 피해규모는 국내총생산의 3% 수준인 50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2]

그러나 그 실상은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수사기관에 자회사의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어 주가하락 등을 고려한 나머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스스로 해결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산업기술 유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영업비밀 유출

1)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National Industrial Security Center : NISC)는 대한민국의 산업보안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기관으로 기술유출 통계에 따르면 2003년 6건,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 32건, 2008년 42건, 2009년 43건, 2010년 41건, 2011년 46건, 2012년 30건, 2013년 49건, 2014년 63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http://service4.nis.go.kr: 2015.12.14 검색).

2) "줄줄 새는 산업 기밀", 중앙일보, 2015. 9. 15.

로 얻게 될 이익이 처벌 가능성에 비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산업기술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산업스파이와 관련한 법규정으로는 2007년 4월 27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라고 한다)이 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제1조는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산업스파이 범죄에 적용하기 위해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이전부터 산업스파이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로 규율해 왔다. 따라서 이 두가지 법률은 상당히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며 특히 국가,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산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에 관련된 모든 기관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은 사후적 규제에 중점을 두는 반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사전 예방적 조치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3] 그러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기술유출과 관련된 처벌규정은 온정주의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하되는 낮은 선고형, 피해금액 산정의 문제점, 재판과정에서의 추가유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의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처벌규정에 참고가 되는 양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 김준동,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정의 의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대한 논의 자료집, 2007. 5. 21, 21-22.쪽.

Ⅱ. 산업스파이 범죄의 이론적 배경

1. 산업스파이 범죄의 정의

산업스파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국어사전에서 '경쟁하는 상대 기업이 가진 경영이나 기술, 생산, 판매 따위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하여 쓰는 사람, 또는 그런 정보를 관계 기업에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4]

스파이(spy, espionage)라 함은 전통적으로 스파이들이 적의 군사적 기밀을 획득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키는 것[5]이며 스파이의 기원은 군대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6] 국어사전에는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으로 설명되어 있고 유의어로 간첩, 첩자, 간자, 밀정, 염탐꾼 등으로 사용되어 지기도 한다. 원래 스파이의 어원은 '멀리 본다' 또는 '숨겨져 있는 것을 목격 또는 발견한다'라는 의미의 고대 프랑스어인 'espier'가 변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이러한 스파이는 냉전체제에서 미국의 CIA와 구 소련의 KGB의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양자 대결로 나타났고 외교, 정치, 군사 분야에서 치열하게 주도권 다툼이 있어 왔다.

4) 네이버 어학사전(http://dic.naver.com/search, 2015. 12. 14. 검색).

5) Hedieh Nasheri, *Economic Espionage and Industrial Spying*(United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 13.

6) Daniel J. Morris, Lawrence P. Ettkin ,Marilyn M. Helms, "Issues in the illegal transference of US information technologies", *Information Management & Computer Security*, Vol. 88, No. 4, 2000, p. 164.

7) 조병인 외,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41쪽.

그러나 구 소련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중국 등 사회주의 체제에 있던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수용함으로 인해 국가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냉전체제에서 주를 이루었던 외교, 군사, 정치 분야와 함께 경제적으로 주도권을 잡기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산업체를 상대로 산업기밀을 수집, 탐지하는 산업스파이의 문제점이 전면에 대두되게 되었다.

'산업스파이'를 활용하는 주체에 따라 국가와 기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국가 차원에서의 산업스파이는 첫째, 자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는데 시간과 재정지출을 줄일 목적이고, 둘째로 자국 기업의 경제적 이득은 곧 국가간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밖에 없다는 부강국가론이며, 셋째로 핵심기술 취득으로 관련 기술에 발전을 기할 수 있고, 넷째로 냉전시대에 외교, 정치, 군사 첩보 수집에 투입하였던 스파이들을 산업기술 분야에 투입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8] 이에 반하여 기업에서는 당연히 경쟁업체로부터 우위를 선점하기 위함이며 여기에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하게 될 시간과 재정지출을 줄이게 되어 자동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일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 또는 기업으로 나누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 기업에 이익은 곧 국가의 부를 창출하게 해 주는 것이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 제고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스파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으로 기업이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의 제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산업상, 영업상 유용한 기술이나 경영정보 등 산업체의 업무에 관한 비밀, 즉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등을 불법적으로 입수하거나 정탐하는 일체의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8) 문규석, "국제법상 산업스파이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17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5, 408쪽.

자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9] '산업스파이'라는 용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언론기사를 검색한 결과 1969년 10월 20일 매일경제 2면 사회면 '알림란'을 통해 "그동안 2면에 연재되던 「산업스파이」는 지면변동에 의하여 간지(間紙)2면으로 옮겨 게재하오니 계속 애독을 바랍니다"[10]는 홍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볼 때 1960년대 전에는 군사적 용어인 '스파이'로 사용하던 것을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산업기술에 스파이라는 용어를 합성시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2. 산업스파이 범죄 현황

산업스파이 범죄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의하면 해외 산업스파이 적발건수는 지난 2003년에 6건에 불과 했으나 2004년에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 32건, 2008년 42건, 2009년 43건, 2010년 41건, 2011년 46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1] 또한 경찰청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산업기술유출 사범 검거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0년 40건에 이르던 것이 지난 2014년에는 세배에 가까운 111건으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이 산업기술유출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는 이유는 스마트폰과 이동저장장치(USB),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손

9) 김종오 · 주성빈,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한 정책적 제언", 사회과학연구 제2권 제1호, 2011, 44쪽.

10)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ie=utf8&query 2015.12.14. 검색).

11) 앞의 각주 1)참조.

쉽게 복제를 하거나 전송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경찰이 그동안 단속한 472건의 산업기술 유출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산업기술을 유출한 주체는 전직직원 52.8%, 현직직원 27.1%, 협력업체 7%, 기타 12.7%, 투자업체 0.4%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현직 직원을 통해 유출되는 사례가 79.9%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이 취급했거나 취급하였던 업무로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업들이 산업 보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핵심기술 보안대책을 강화해 상대적으로 외부인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산업기술 유출로 기업이 입은 피해규모는 국내총생산의 3% 수준인 50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액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을 107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4,700여개의 업체에서 1년간 올릴 매출액의 규모라고 생각해 보면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기술 유출의 동기는 개인의 영리를 위해 기술을 유출한 사례가 61%, 금전유혹이 1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인사불만 8%, 대우불만 5%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영업비밀 유출로 얻게 될 이익이 처벌 가능성에 비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산업기술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대변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모든 법규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집행결손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한다.

3. 소결

산업스파이라는 용어는 군대에서 사용하던 스파이에서 유래되어 왔다. 1960년대를 전,후하여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산업기술에 스파이라는 용어를 합성시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21세기 글로벌 경쟁

시대인 요즘 첨단 과학기술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과 생존권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과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첨단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상대 국가의 산업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국제무대의 중심 도시이고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도 높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산업스파이들의 핵심거점으로 활동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고 한다.[12] 미국, 일본 등 원천기술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보안시스템이 발달되어 기술유출자에 대한 처벌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산업스파이에 대한 간첩죄 처벌은 물론이고 국가간 외교 단절도 불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보안의식이 낮고 보안시스템도 미비하며 처벌규정 또한 낮아 산업스파이들의 활동무대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심각성과 보안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홍보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집행완결 의지가 중요하다. 또한 산업기술의 유출이 대부분 전,현직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피해를 본 기업은 주가하락 등을 이유로 피해사실을 숨길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하며 피해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산업스파이 범죄의 수사체계

1. 우리나라 산업스파이 범죄의 수사체계

산업기술의 유출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 막대한 돈

12) "국가 경쟁력 멍들게 하는 기술유출 범죄", 서울경제신문, 2015. 9.10 참조.

과 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은 기업의 가장큰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개발해 놓은 산업기술이 유출되는 경로는 대부분이 내부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산업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사후적 체계가 아니라 사전에 미리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번 유출된 기술에 대해서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출되기 전에 미리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다. 유출되는 기술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핵심기술일 경우 국가경제는 물론이고 국방 등 국가수호 체계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찰

경찰은 2004년 3월부터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 '산업스파이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부터는 각 지방경찰청별로 산업체 및 연구소 보안담당자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산업보안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산업스파이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에 산업보안전담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 외사국에 국제범죄수사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첨단산업기술유출 관련 수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13] 또한 경찰청에서는 2010년 7월 6개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대'를 발대한 이후 전문 수사경력 보유자 및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전문가들로 수사대를 확대, 편성하여 총 8개 지방경찰청(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북, 경남)에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13) 선종수,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체계의 제검토", 가천법학 제7권 제3호, 2014. 12쪽.

와 더불어 수사자문·지도 역할을 하는 산업기술유출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첨단산업기술유출 관련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한번 기술이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유출사범 검거뿐만 아니라 기술유출 예방활동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에는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중소기업 보안인력 양성교육(6월, 11월) 및 특허청과 합동으로 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 대상 보안진단 실시(7월 4일 ~ 9월 10일, 24개 업체)를 통해 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기법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기술보호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단속한 산업기술유출 사건중 해외로 유출된 사건을 19%정도 되며 유출 국가로는 중국, 미국, 스페인, 베트남, 일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술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2011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불공정기업 제재공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며 2013. 8.월에는 경찰에서 통보한 가해기업에 대해 무역위원회에서 최초로 수출입금지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하기도 하였다.[14]

현재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대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관은 약 300여명 정도이며 이들이 첨단산업 기술보호 및 국부유출을 막기위해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검찰

검찰은 1995년 4월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2부에 "정보범죄수사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산업기술유출 범죄를 수사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4) 경찰청, 2014 경찰백서, 2014, 313쪽; 정웅, "산업보안범죄의 최근 동향과 대응전략",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32쪽.

1996년 6.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실에 “정보범죄대책본부”를 설치하였으며, 1999년 4월 대검찰청에 “정보범죄대책본부”를 “컴퓨터범죄 전담수사반”으로 개칭하였다. 2000년 2월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컴퓨터수사과”를 설치하고, 서울지방검찰청에 “컴퓨터수사부”를 신설하였다. 2004년 10월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컴퓨터범죄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05년 2월에는 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를 “첨단범죄수사과”로 개칭하였고, 2005년 2월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를 “첨단범죄수사부”로 개칭하였다. 2005년 4월 대검찰청 특별수사지원과를 “첨단범죄수사과”로 통합하였고, 2007년 2월에는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에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09년 1월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있는 “첨단범죄수사부”를 ”첨단범죄수사 제1·2부”로 분리하였으며, 2010년 5월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에 ”기술유출·인터넷범죄수사센터”로 통합하였다. 2011년 4월에는 울산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11년 11월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에 “기술유출·인터넷범죄수사센터”를 분리하여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로 개칭하였다. 2013년 11월에는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 소속을 “대검찰청 수사지원과”로 변경하여 산업기술유출 범죄를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15]

3)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은 2003년 10월 산업기밀보호센터를 설립하여 기업체와 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과 경영상 정보가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산업스파이 색출 활동과 함께 산업보안 교육

15) 대검찰청(http://www.spo.go.kr, 2015.12.12. 검색).

및 보안 컨설팅 등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16]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인터넷에 국가정보원과 별개의 사이트(service12.nis.go.kr)를 개설,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로 '첨단기술 해외유출 차단활동'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우리의 첨단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려는 산업스파이를 적발함으로써 국부유출을 차단하고 있고, 기술유출과 관련된 정보를 사안에 따라 해당업체 또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둘째로는 '산업보안 교육 및 컨설팅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기업·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교육 및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기청·특허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기업체 대상 산업보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체의 보안마인드 확산과 자율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셋째로는 '방산기술·전략물자 불법 수출 차단활동'을 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 및 방위사업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과 방산 및 군사기술의 해외 유출 차단활동 등 새로운 경제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예방과 색출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넷째로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기업의 해외 현지에서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피해 발생시, 특허청과 KOTRA(IP-desk: 해외지식재산센터)·외교부·문화부(해외저작권센터) 등과 공조하여 대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로 '외국의 경제질서 교란 활동을 차단'하고 있다. 외국과 연계된 투기자본 등에 의한 경제안보 침해행위와 인수합병(M&A)을 가장한 기술유출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정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11콜센터(www.nis.go.kr)를 통해 24시간 '산업스파이 신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16) 선종수, 앞의 논문 13쪽.

2. 소결

우리나라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한 수사체계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 국내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맡고 있고 검찰은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모양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 간 공조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기관 간 알력으로 인해 수사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산업스파이는 국부유출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스파이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각 기관 간 공조수사는 물론이고 분야별로 나누어 선택과 집중으로 수사체계를 재편성하여 산업기술 유출을 막는데 기관간 칸막이는 없애야 할 것이다.

Ⅳ. 산업스파이 범죄의 처벌규정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개발을 발판으로 반도체 기술을 비롯하여 전자, 통신, 정밀기계 등 분야에서 산업기술이 발전하자 개발된 산업기술이 불법으로 유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으로 칭한다)」에 따라 규제를 해 왔으나 처벌대상이 민간 기업비밀 누설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각종 법률에 산재하여 있는 관련 규정으로는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근절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 핵심기술 보호 및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으로 칭한다)」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률은 2004년 11월 이광재 의원 등 여야의원 34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2006년 9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6년 10월 27일 공포되었으며 2007년 4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에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부경법」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1.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처벌규정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총 6장 39조로 되어 있다. 이중 6장에서 벌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36조는 벌칙, 제37조는 예비·음모, 제38조는 양벌규정, 제39조는 과태료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처벌규정 중 핵심적 내용은 이법 제정당시 제36조 제1항에서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자에 대한 벌칙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는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에는 미흡한 형량이라는 지적에 따라 2008. 3. 14.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이법 제38조 양벌규정은 현행 양벌규정에서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2008. 12. 26.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법 제35조에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에게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형법 제129조(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에게는 비밀유지의무(제34조)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다.

▶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및 침해행위
⇒ 10년 이하이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산업기술을 내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및 침해행위
⇒ 5년 이하이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산업기술을 국외 및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하여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
⇒ 5년이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지격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몰수규정, 미수범처벌 규정,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규정.

2. 「부정경쟁방지법」 처벌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1962년 1월 1일 법률 제911호[17]로 제정되었다.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국제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국가의 핵심기술의 유출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17) 위 법령은 총 10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9조 벌칙에서 제6조의 국기, 국장 등을 상품로 사용하거나 상표로 상품 등으로 사용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환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었다.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하고 위조상품의 제조·판매 등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99년 1월 1일 이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중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내용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제명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제명이 변경될 당시의 법률에는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청구인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등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또한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국내에서 누설한 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하여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후 이 법률은 2007년 12월 21일 제18조(벌칙) 조항에서 형량을 '징역 7년'에서 '징역 10년'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벌금액을 1억 원에서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액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미수범(법 제18조의2)과 예비·음모(법 제18조의3)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009년 3월 25일에는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정경쟁방지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전문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및 제129조(수뢰)부터 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에 적용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최근 2015년 7월 29일에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으로 비

밀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등록을 통하여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곤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나, 원본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원본등록된 정보의 보유사실에 대한 추정규정이 없어 입증곤란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서 왔다. 이에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고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입증곤란을 완화하였다.

3. 소결

산업스파이로부터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예방 노력이 우선적이겠으나 기업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한 기업의 존·폐위기를 넘어 국가의 경쟁력에 흥망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산업스파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시행해 오던 중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다른나라에 비해 형량 및 재판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국내 5년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에 법정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재판과

정에서 증거조사시 거증책임의 전환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미국의 경우 경제스파이법(EEA)을 제정하여 국외 유출범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국내 유출범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50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둘째로 피해액 산정에서 재산상 이득액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산업기술 유출로 인해 입게 되는 기업의 예상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에는 손해액을 보상해주고 국가는 벌금이나 추징, 몰수규정을 마련하여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로 신속한 재판의 진행과 재판과정에서의 비공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현재의 공판 제도로서는 재판과정에서 추가 유출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재판의 초기단계인 심리단계에서부터 증거조사 등 모든 재판과정이 비공개 원칙을 법률로 규정해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18] 또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명시적 규정으로의 개정도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모든 산업스파이는 처벌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관(경찰, 검찰, 국정원) 및 민간단체간 협조체제가 원할이 이루어져 모든 산업스파이 범죄는 처벌을 받는다는 집행완결의 확고한 의지가 요망된다 하겠다.

18)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12. 30).

Ⅴ. 산업스파이 범죄의 양형기준

1. 양형기준

1) 양형기준의 의미

양형(量刑)의 사전적 의미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19] '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20]의 의미다. 이에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뜻한다. 양형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생명까지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양형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은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에 해당한다.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 양형기준이다.[21]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1.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19) 네이버 국어사전(http://dic.naver.com, 2015. 12. 14 검색).

20) 위키피디아 백과사전(https://ko.wikipedia.org, 2015. 12. 14 검색).

21)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22]

2) 양형기준의 적용범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23] 양형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그 이후에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로 공소제기 되었다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형사재판 진행 중에 양형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소제기 시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소제기 후 양형기준의 변경에 의하여 대상범죄가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변경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범위가 종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범위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양형기준은 구약식 또는 정식재판청구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고

22)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죄질, 범정(犯情) 및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 요소에 차이가 없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23) 양형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공판절차회부 사건에만 적용한다. 구공판 사건이라도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이 벌금형에 관한 기준을 별개로 또는 징역형과 병행하여 제시하거나 벌금형 선택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지침을 설정하지 않는 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양형기준은 살인범의 미수범에 관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양형기준이 다른 대상범죄의 미수범죄 전반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살인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군의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공동정범과 교사범에만 적용되며 방조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내국인 외국인 구분없이 적용되며 소년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고[24] 성인에게만 적용하지만 공소제기시 19세에 도달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한다.[25]

3) 양형기준의 효력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종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여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에 해당된다.[26] 다만 법관은 양형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며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27] 이 경우

24) 소년법 제2조에 의하면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자를 말한다.

25)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15, 520-521쪽.

26)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27)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형이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률상 강제된 방식은 없으나 법관으로서는 당해 사건에 가장 적합하고 설득력 있는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 양형위원회

유사한 범죄 사례에도 법원에 따라 재판부에 따라 양형의 편차가 높자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국민감정이 악화되었다. 이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07년 4월 27일 대법원에 '양형위원회'가 설립되었다.[28]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이 있고 이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하여야 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2015년 4월 27일부터 제5기 양형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살인, 뇌물, 성범죄를 비롯하여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포함되어 있는 지식재산권범죄 등 32개 범죄군에 대해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29]

2.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양형기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법정형은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면 10년 이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국내로 유출하면 5년 이하 징

28) 법원조직법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9) 양형위원회(http://www.scourt.go.kr, 2015. 12. 14 검색).

역,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국외로 유출시 기본이 1년에서 3년에서 시작하여 감경시 10월에서 1년 6월, 가중시 2년에서 5년형을 선고하도록 기준을 정해 놓았다. 또한 국내로 유출시 기본이 8월에서 1년6월에서 시작하여 감경시 10월, 가중시 1년에서 3년을 선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법정형에 비추어 미약하기 그지없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양형인자로는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인지 여부 및 누범이 있는지 여부 등이 고려대상이 된다. 이에 가담정도가 경미하거나 농아자, 심신미약자 및 자수한 자 등에 대해서는 감경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일반양형인자로는 유출된 산업기술이 실제로 사용되어 졌는지 여부와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는지 등이 특별양형인자로 고려 대상이 되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는지 여부 및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이 감경요소로 작용한다.

3. 「부정경쟁방지법」 양형기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국외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과 국내유출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에서는 기본 6월에서 1년4월로 시작하여 가중시 10월에서 2년, 감경시 8월을 선고할 수 있다. 이 또한 법정형에 지추여 양형기준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마찬가지로 특별양형인자로는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인지 여부 및 누범이 있는지 여부 등이 고려대상이 된다. 이에 가담정도가 경미하거나 농아자, 심신미약자 및 자수한 자 등에 대해서는 감경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일반양형인자로는 반복적 또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인지 및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가 가중사유에 해당하고 피해회

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는지 여부 및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이 감경요소로 작용한다.

4. 소 결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법관을 구속할 수 있는 구속력은 없으나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만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법관이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법정형'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 예컨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이다. 양형인자를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 하겠다. 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②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④ 처벌불원 즉,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⑤ 계획적이거나 조직적 범행인지 여부, ⑥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⑦ 관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⑧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수된 경우, ⑨ 특히 「산업기술유출보호법」상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고령 등이 집행유예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30]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양형기준을 정한 기본

30) 양형위원회, 앞의 책 270-275쪽.

형량[31]이 이 낮게 결정된 것은 그동안 같은 유형의 판례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피해자 중심의 엄정한 재판보다는 온정주의에 이끌린 솜방망이 처벌[32]과 피해자 중심의 입증책임 재판절차 또한 이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하겠다.

Ⅵ. 결 론

산업스파이로부터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예방 노력이 우선적이겠으나 기업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한 기업의 존·폐의 위기를 넘어 국가의 경쟁력에 흥망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스파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시행해 오던 중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형량 및 재판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첫째로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억 원이하(국내 5년 이하 또

31)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중 국외침해 1년~3년, 국내침해: 8월~1년 6월. 「부정경쟁방지법」: 6월~1년 4월.

32)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광명 갑)이 2014. 8. 22.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시 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최근 5년('09년~'13년 9월)간 기술유출사범 처벌 현황을 보면, 기소된 719명 중 형확정자 464명을 기준으로, 실형은 단 32명(6.9%)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집행유예(287명, 61.9%), 벌금(72명, 15.5%)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다(http://www.ok100.or.kr/sub/sub03.html, 2015. 12. 14 검색).

는 5억 원 이하)로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증거조사 시 거증책임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로 피해액 산정에서 재산상 이득액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산업기술 유출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기업의 예상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물론 학계와 법조계에서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등을 논의 중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기업에 예상되는 손해액을 보상해주고 국가는 벌금이나 추징, 몰수규정을 마련하여 귀속시키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로 신속한 재판의 진행과 재판과정에서의 비공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현재의 공개재판 제도로서는 재판과정에서 추가 기술유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재판의 초기단계인 심리단계에서부터 증거조사 등 모든 재판과정을 비공개 원칙으로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법령 또는 「법원조직법」에 명시적 규정으로의 개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산업스파이는 처벌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 국정원 및 민간단체, 기업체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산업스파이 범죄는 그물망에 걸리는 자만 처벌받는다는 집행결손이 아닌 모든 산업스파이 범죄는 온전히 모두 처벌을 받는다는 집행완결의 확고한 국가적 의지가 필요하다 하겠다.

◈ 주제어(Key Words) : 산업스파이(industrial espionage), 산업기술유출(outflow of industry technology), 양형기준(sentencing guidelines)

〈논문 접수 : 2015. 11. 11, 심사 개시 : 2015. 11. 17, 게재 확정 : 2015. 12. 23〉

참 고 문 헌

Ⅰ. 국내문헌

1. 단행본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5.

노명선 · 이완규, 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5.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5.

_____,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신광은, 형사소송법, 웅비, 2015.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15.

최호진, 형법총론강의,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_____, 형법각론강의,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2. 논 문

김준동,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정의 의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대한 논의 자료집, 2007.

김종오 · 주성빈,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한 정책적 제언”, 사회과학연구 제2권 제1호, 2011.

문규석, “국제법상 산업스파이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17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5.

선종수,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체계의 재검토”, 가천법학 제7권 제3호, 2014.

이준복, “산업스파이 및 M&A에 따른 산업기술유출 대응방안에관한 법적 연

구“, 경찰학연구 제14권 제3호(통권 제39호).

이정원, “한국의 산업기술 부정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 및 대한”, 영남법학, 제30호 2010.

윤종행, “산업스파이에 관한 미국의 최근판례와 입법의 동향”, 강원법학 44권, 강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정철호, “양형이론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2003.

주영걸, “산업스파이 범죄 대응의 문제와 개선방안“, 동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Ⅱ. 외국문헌

Hedieh Nasheri, Economic Espionage and Industrial Spying(United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2005).

Daniel J. Morris, Lawrence P. Ettkin ,Marilyn M. Helms, “Issues in the illegal transference of US information technologies”, Information Management& Computer Security, Vol. 88, No. 4, 2000.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18 U.S. Code § 1831 - Economic espionage.

18 U.S. Code § 1832. Theft of trade secrets.

Ⅲ. 기타

대법원(http://www.scourt.go.kr).

양형위원회((http://www.scourt.go.kr).

검찰청(http://www.spo.go.kr).

경찰청(http://www.polics.go.kr).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service12.nis.go.kr).

법제처(http://www.moleg.go.kr).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네이버 어학사전(http://dic.naver.com).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광명 갑)(http://www.ok100.or.kr).

< ABSTRACT >

Improvement Regarding the Restrictions and Sentencing Guidelines of the Industrial Espionage in Korea

Park, Rak-In

In the era of global competition, the trade core production secret a company has may become a valuable target for a competitor. As Elvin Toffler, an American writer and futurist, once said "Among the boom businesses of the decades ahead, espionage will be one of the biggest", spies are becoming more intelligent, latent and cutting-edge. As South Korean industries develop higher level technology, Seoul is becoming a popular destination for the spies.

Korea have put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in force in order to protect its industrial technologies, but the number of leakage cases are increasing. It is because the expected punishment when prosecuted is lighter than the proceeds of successful heist of information. Entities developing and retaining such information are putting more effort on personnel management and employee benefits.

A few problems can be found in regarding to the prosecution. First of all, the punishment should be severe than now; it is often pejoritively said that it is mere a slap on the wrist. It is partially because of the difficulties in assessing the amount of damage. Also, there are little

protection of further information leakage in the course of litigation.

Thus, in this writing we will discuss the current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prosecution, the legal codes, and the sentencing guidelines of industrial espionage.